

'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9. 26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9. 26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10. 22 (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재무과장 정 부 응
- 나. 제안이유
 -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상기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.
- 다. 주요내용
 - 관내 폐지학교중 교육장소와 수련장등 주민편의 행정과 공유재산 증식 차원에서 향후 이용가치가 높은 폐지학교를 매입하여 활용코자함.
 - 매입대상 폐지학교

폐지학교명	위 치	규 모		교육청 평가액
		대 지	건 물	
계	2개소	30,460㎡	2,978㎡	212,475천원
춘양초교 월평분교	춘양면 월평리	18,969㎡	1,704㎡	113,684천원
청풍초교 세청분교	청풍면 세청리	11,491㎡	1,274㎡	98,791천원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허길중)

-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을 사항으로 화순군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('97. 9. 12)를 거치는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며,

- 앞으로 장기적인 주민 복지시설 교육장소, 수련장등 주민편익 행정 추진과 공유재산 증식 차원에서 매입 활용코자 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때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,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타당하다고 봄,
- 다만 매입 대상 토지가 본래 공유재산 취득 목적과 부합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유재산 활용 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략 "

5. 토론요지

" 생략 "

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 "

첨 부 : '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

'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

의안 번호	97 - 118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9. 19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함.

2. 주요내용

- 관내 폐지학교중 교육장소, 수련장등 주민편익 행정과 공유재산 증식 차원에서 향후 이용가치가 있는 폐지학교를 매입코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한것임.

3. 매입대상 폐지학교

폐지학교명	위 치	규 모		교육청 평가액
		대 지	건 물	
계	2개소	30,460㎡	2,978㎡	212,475천원
춘양초교 월평분교	춘양면 월평리	18,969㎡	1,704㎡	113,684천원
청풍초교 세청분교	청풍면 세청리	11,491㎡	1,274㎡	98,791천원

4. 군의 의견

- 주민복지시설 및 교육장소, 수련장등 주민편익 행정 및 공유재산 증식 차원에서 매입하여 활용코자 함.